

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당 지급지침

제정 2013.01.29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연구개발사업과제(이하 “과제”라 한다)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연구수당 배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중 연구수당 예산이 편성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연구수당 지급은 해당과제에 참여한 연구원과 조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재원) ① 연구수당은 과제에 편성된 연구수당을 그 재원으로 하며, 인건비의 20% 이내에서 계상한다.

②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서보다 증액을 할 수 없다. 다만, 감액 후 직접비로 편성하여 사용은 가능하다.

제5조(지급기준) ① 해당과제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연구수당 지급단가 등 제한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한다. 그 이외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비관리 규정 및 방침을 준용한다.

② 이공계 연구책임자는 자체 평가기준 항목(과제 참여율, 연구활동, 연구성과 등) 설정, 참여 연구대상자 평가, 연구수당 단가산정을 할 수 있다.

③ 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1인 또는 특정인에게 연구수당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.

④ 이공계 참여자의 개인별 연구수당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지급시기)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시작일로부터 연구종료일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, 연구 개시 1개월 이후 과제 참여율이 산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신청)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월의 급여일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1의 연구수당 지급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13. 01. 29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<별표 1>

연구수당 지급 청구서

| | | | | | | |
|---|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연구책임자 | 소 속 | | 직 급 | | 성 명 | |
| 연구과제명 | | | | | | |
| 당해연구기간 | | | 지원기관 | | | |
| 연구비총액 | | | 원 | 연구분야 | | |
| 지 급 내 역 | | | | | | |
| 성 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 은행/계좌번호 | | 지급액(원)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| | |
| 연구원별 평가결과 | | | | | | |
| 소 속 | 직 급 | 성 명 | 평가내용 | | | 종합평가(%) |
| | | | 과제참여율(%) | 연구활동(%) | 연구성과(%) | |
| | | 산출 예시 | 30 | 70 | 10 | 37 |
| | | 산출 예시 | 50 | 20 | 50 | 40 |
| | | 산출 예시 | 20 | 10 | 40 | 23 |
| | | 이하 공란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합 계 | | | 100 | 100 | 100 | 100 |
| <p>붙임: 연구원별 평가결과의 증빙자료 사본 1부</p> <p>※ 총 연구수당 × 종합평가(평가내용의 평균, %) = 지급액</p> <p>※ 음영 표시된 부분의 총합은 100%임</p> <p>※ 인문사회분야는 월단위의 연구활동 경비이기에, 평가결과를 생략하고 균등배분한 지급내역만 작성하여 제출</p> <p>※ 증빙자료는 참여연구원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(표지), 특허관련 자료, 보고서(표지), 실험결과서(표지) 등을 의미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참여율: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보고서작성 등의 연구분담 중심의 평가 - 연구활동: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, 실험, 회의참석 등 대내외 연구활동 중심의 평가 - 연구성과: 연구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연구결과의 실적(논문내용, 특허출원 등) 중심의 평가 <p>※ 위의 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원별 연구수당 지급액을 신청함</p> | | | | | | |
| <p>위와 같이 연구수당을 신청합니다.</p> <p>20</p> <p>연구책임자 (인)</p> | | | | | | |
| <p>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</p> | | | | | | |